

글로벌 ICT 주간동향리포트

정책/규제

프로젝트/투자

인기기술/인기제품

신기술/신제품

ICT 기업

2021년 9월,

중국 데이터보안법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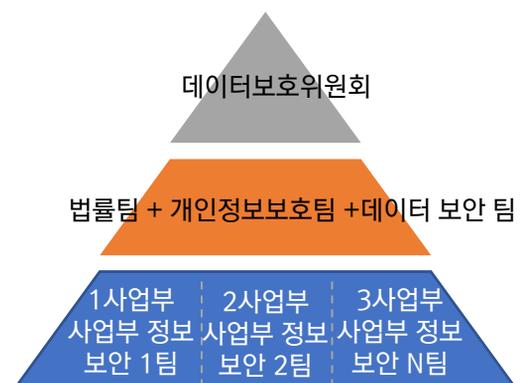


중국, 2021년 9월 데이터 보안법 시행 예정

2021년 6월 10일 디지털 정보에 대한 정부의 감독권을 강화하는 ‘데이터 보안법’ 제정안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됨. 데이터 보안법이 제정됨에 따라 중국 자국 내 기업은 물론 해외 기업까지 당국의 규제가 가능해져 주목됨. 중국의 데이터 보안법 초안은 2020년 7월 3일 처음 공표된 이후, 2021년 4월 2번째 초안이 발표되고 6월 3일 3차 개정안이 이루어지면서 올해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금번 시행되는 중국 데이터 보안법의 핵심은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의 디지털 경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호 체제를 강화하는 것임. 이에 따라 중국 내의 개인 데이터는 모두 국가 서버에 저장됨. 중국은 2025년에 이르면 전세계 디지털 데이터 중 약 3분의 1을 생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이러한 추세를 고려해 중국 정부는 하향식 전략을 통해 데이터 시장을 관리하고 민감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함. 이에 따라 법 접촉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이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관리들에게 부여됐다는 점에서 주목됨

중국 정부의 데이터 보안법 제정은 ‘알리바바’, ‘텐센트’와 같은 자국 내 거대 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실제로 7월 4일 중국 국가인터넷 정보판공실은 중화인민공화국인터넷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미국에서 상장된 44억 달러(5조 578억 원) 규모 중국 기업 ‘디디글로벌’의 애플리케이션 제거 명령을 내린 바 있음. 이에 따라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은 물론, 사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시하는 페이스북, 애플 등과 같은 해외 기업들의 중국내 진출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 예상됨

[중국의 하향식 데이터 보호 관리 전략]



국가 간 데이터 전송 규제

중국 데이터 보안법은 국가 간 데이터 전송을 규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음. 데이터보안법 제4장 제31조에 의하면 중국 내에서 수집 및 생산된 주요 데이터의 외부유출안 관리는 <중화인민공화국사이버안전법>의 규정이 적용됨. 또한 이러한 데이터는 원칙적으로 중국 내에서 보관되며 해외로 이전해야 할 경우 국무원 유관 부서의 협의를 통한 보안 평가가 수행되어야 함. 만약 데이터 보안법 31조를 위반하고 중요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해외로 전송 시 관련자는 시정 명령과 함께 10만 위안(약 1,777만 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됨. 사안이 엄중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최소 100만(1억 7,772만 원) 위안, 최대 1,000만(17억 7,720만 원) 위안의 벌금이 부과됨과 동시에 해당 사업장은 정지될 수 있음.

국가 간 데이터 전송 규제와 관련해 데이터 보안법은 국외로 유출되는 데이터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중요 데이터의 기준을 광범위하게 정의해 모든 개인과 업체가 이에 해당될 수 있게끔 한 것이 특징임. 이는 타국에서 상장을 준비하는 자국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중국 당국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 해외 상장을 준비하는 중국 기업들의 움직임에 제동이 걸림

데이터 거래 중개서비스 업체 관련 준수 사항

중국 내에는 'Tianyancha', 'Qichacha', 'Tianyuan Data' 등 여러 데이터 거래 플랫폼이 존재함. 데이터 공급자와 수요자는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 데이터를 거래해 왔음. 이전에는 이러한 데이터 거래 과정에 대한 규제 및 모니터링이 진행되지 않았으나 데이터 보안법의 제정으로 데이터 거래 시장에 있어 표준 규범이 제시됨. 데이터 보안법 33조는 데이터 거래 중개 서비스 업체 관련 준수사항을 제시하고 있음. 우선 데이터 거래 중개 서비스 업체는 데이터 공급자에게 데이터 출처를 요구해야 함. 즉, 데이터가 불법적인 경로로 획득되어서는 안 되며, 중국법에서 금지한 데이터를 거래하지 않아야 함. 둘째, 데이터 거래 중개 서비스 업체는 거래 당사자들의 신원을 확인해야 함. 합법적 기관 또는 자연인만 거래에 참여할 수 있으며, 특정 데이터에 한해서는 라이선스를 취득한 대상자만 거래를 가능하게 함. 셋째로, 데이터 거래 중개 서비스 업체는 조사 및 거래에 관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데이터 거래 프로세스]



제 31조 관련 의무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중개서비스 제공 업체는 처벌을 받을 수 있음. 불법적으로 취득한 이윤은 국가가 몰수하며, 취득한 이윤의 최대 10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불법 취득 이윤이 10만 위안(약 1,777만 원) 미만인 경우 해당 업체는 최소 10만 위안(약 1,777만 원), 최대 100만 위안(약 1억 7,722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또한 중국 당국은 해당 사업장의 영업을 중단하거나 사업 허가를 취소할 있음

기존 데이터 관련법과 데이터보안법의 상호 작동 방식

데이터 및 정보 보안과 관련해 현재 중국에는 3가지의 관련법이 존재함. 2017년 6월 1일에 제정된 ‘사이버보안법’, 2021년 4월 29일 공포된 개인정보 보호법(PIPL) 초안, 그리고 2021년 9월 1일 시행 예정된 데이터 보안법임. 해당 세가지 법안은 중국 내 정보 및 데이터 보안 관련 포괄적 법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주요 데이터 및 정보 보안법 비교

	사이버보안법	개인정보법(PIPL) 초안	데이터보안법
목적	사이버 보안 보장, 사이버 주권 획득, 국가 안보 및 공익 확보	개인정보 권리 및 이익 보호, 개인정보 처리 활동 규제 및 개인정보 합리적 사용 촉진	데이터 처리 활동 주력 및 데이터 보안 보장, 데이터 개발 및 데이터 활용에 중점
우선순위	사이버공간 보안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및 데이터 처리 활동 관련 보안, 안전감독
적용범위	중국 내 네트워크 구축, 운영, 유지 및 보수	개인정보 처리 관련 중국 내 자연인 및 개인정보 처리 관련 특정 조건 하 중국 외부 자연인	중국 내부 및 외부에서 수행되는 데이터 처리 활동
데이터정의	네트워크를 통해 수집, 저장, 전송, 처리, 생성되는 여러 종류의 전자 데이터	데이터 정의 없음	전자기기 및 기타 수단으로 기록된 모든 정보
규제 대상자	네트워크 운영자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개인 및 단체	데이터를 처리하는 모든 개인 및 단체
치외관할권	해당 없음	특정 조건에서 적용	특정 조건에서 적용
국외 데이터 전송	보안 검토는 관련 조치에 의거해 수행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에서 안전 평가 요구 가능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및 국무원 산하 관련 부서에서 제정한 행정 조치 준수

(*) 출처 - China Briefing

참고문헌

- 차이나브리핑(www.china-briefing.com), A Close Reading of China’s Data Security Law..., 2021년 7월 14일
- 차이나브리핑(www.china-briefing.com), China Releases Data Security Law: Some Expert..., 2021년 6월 23일
- CNBC(www.cnbc.com). In a quest to rein in its tech giants, China turns to data protection, 2020년 4월 11일
- CPO MAGAZINE(www.cpomagazine.com), New Data Security Law in China Makes Government..., 2021년 6월 21일
- 로이터(www.reuters.com), Explainer: What is driving China's clampdown on Didi and data..., 2021년 7월 7일